

<임진강 상류소재 공장등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한 어업 손실회 분쟁사건>

1. 사건의 개요

<사건요지>

임진강 상류소재 60개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로 인해 '96. 6. 11 ~ 15일 임진강에서 서식 하던 물고기가 집단폐사하여 임진강하류 문산읍 일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 ○○ 외 72 명의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총 3,314,318,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불법배출한 폐수로 인하여 임진강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집단폐사하여 물고기 잡이를 생계로 하는 신청인에게 어획량 감소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는 바 '96년 실질적 피해와 '97~'98년 예상피해를 이유로 금 3,314,318,000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임진강 물고기 폐사사고를 갑작스런 경우로 인하여 그동안 누적되어온 여러 오염물질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고로써 신청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임진강 물고기를 폐사시켰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진강 물고기 폐사사고를 신청 주변지역 사업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2. 사실조사

가. 분쟁지역의 현황

-분쟁지역은 임진강유역과 인근지천으로서 임진강을 본류로 하고 한탄강, 신천, 포천천, 영평천 등의 지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철원 등을 경유하여 경기 북부 지역을 거쳐 한강하류와 합류하여 서해로 흐른다.

-임진강 관할 행정구역은 동두천시, 양주군, 파주시, 포천군, 연천군으로서 이들 구역의 면적은 2,282㎢이고, 인구는 559,000명이며, 임진강 수계의 상류지천인 신천은 동두천시, 양주군의 생활하수와 공장 및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V등급

을 초과하는 오염우심하천으로, 한탄강 하류와의 합류지점에 1.5km의 폐수 분리제방을 설치하여 신천지역의 오염수를 하류부에서 합류시켜 임진강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나. 하천별 오염도 현황

-한강수질검사소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주요하천 오염도(BOD)조사』결과에 따른 1996년도 임진강, 한탄강, 신천의 수질을 비교해 보면, 신천이 합류하기전 한탄강의 BOD는 2.4mg/ℓ 로써 신천유역의 업체들로부터 나온 폐수가 임진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신천인의 어업현황

(1) 어업현황

-신천인들은 파주시로부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자망 및 주뉴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임진강 하류 문산을 일대에서 소규모 어선(0.18~0.62t)을 이용하여 메기, 붕어, 쏘가리, 황복, 뱀장어, 참계, 잉어, 송어, 눈치 등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포획한 후 이를 인근의 음식점이나 양어장에 양란용으로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어민들로서 실뱀장어가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조업구역별로는 6개의 선단 총 84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어획량

-신천인들은 1996. 6. 9일 피신청인들이 폐수를 방류한 후 어업생산량이 종전의 1/10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어선의 권리금은 없어진 상태라고 주장하나, 실제 어획량 및 어업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음.

라. 피신청인 현황

-피신청인은 임진강 수계의 상류지천인 신천유역에서 조업하는 500여개 사업장중 섬유, 피혁, 금속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60개 사업장으로써 제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신천에 방류하고 있다.

마. 사고당시의 수질현황

-사고당시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의한 파평취수장의 수질검사 기록을 보면 6월 평시의 용존산소량(DO)은 5.22mg/ℓ 였으나, 6월 11일 11:00~6월 12일 03:00사이 시간대별로 3.92mg/ℓ 에서 2.13mg/ℓ 까지 저하되었다가 3.09mg/ℓ 로 나아졌으며, 이후는 3.5mg/ℓ 이

상을 유지함.

3. 인과관계

(1) 대상여부

- 신청인들의 어업행위는 "내수면개발촉진법"상의 허가사항으로 "수산업법 제82조"는 면허인 경우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상의 물고기는 신청인들의 사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들은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임진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포획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물고기가 폐사함으로써 어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면허이든 허가이든 관계없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피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2) 폐사지점

- 환경부 환경조사과와 한강환경관리청 및 관련 시·군의 당시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요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지점은 신천합류후 한탄강 하류지점이며, 임진강에서 발견된 폐사 물고기는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업구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사고당시 현장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관심사항은 문산취수장의 식수문제였으므로 임진강 유역에서의 물고기 폐사에 관한 기록이 미흡하며 당시 언론기관의 보도 및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조업하는 임진강 유역에서도 다량의 폐사어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천하류에서 형성된 산소 고갈대가 6. 15일까지 약 40km정도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물고기가 질식사하였다는 점등을 통해 볼 때 주요 폐사지점은 한탄강 유역이라 하더라도 임진강 유역에서도 일부 폐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 임진강 물고기 폐사원인은 사고당시의 환경부 및 관련 시·군의 공동조사 보고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가미의 변색 등 어형상의 변화가 없고 다른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물고기 폐사의 원인은 갈수기(5. 8일 이후 6.5mm)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강우로 인근 토양의 퇴적물들과 신천유역의 오염물질들이 유입되고, 분리독의 붕괴에 따른 하상퇴적물의 뒤집힘 현상에 의해 하천의

부유물질이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하는 등, 임진강 수질환경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수중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일어난 물고기 폐사인 바, 이 경우, 신천변에 위치한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임진강 수중 용존산소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어종의 인정여부

- 신청인은 잉어, 붕어, 메기, 복어, 뱀장어, 실뱀장어 등을 피해어종으로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중 실뱀장어의 생태를 살펴보면 성어 뱀장어가 남태평양 "마리아나 열도" 부근에서 산란 하여 수정란에서 부화한 유생은 "렙토세파루스(leptocephalus)로 반투명의 대나무 잎 모양이며, 그해 가을까지는 50mm 이상의 하얀 실뱀장어로 변태하여 연안 가까운 곳의 바다 밑이나 진흙 바닥에서 월동하나 그 이듬 해 2~4월경 우리나라의 각 하천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바, 이와 같이 실뱀장어 의 생산시기는 3~5월 사이로 임진강 6. 10일의 물고기 폐사한 때에는 이미 실뱀장어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실뱀장어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피해기간 및 피해액

- 신청인은 피해기간을 물고기가 폐사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고기 폐사 전년도인 '95년을 비교년도('94년이전 자료 없음)로 할 때 전체어획량이 '97년은 13.3%, '98년에는 18.0% 증가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중 '96년의 피해는 인정되나 '97년, '98년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피해 배상액

(1) 배상액 산정기준

- 배상액 산정기준은 파주시에 제출한 "어업생산 판매실적"으로 작성한 파주시 "선단별·연도별 어획량 및 판매실적"을 인용한다.신청인의 물고기 어획량 및 판매의 비교년도('95년)는 임진강 물고기 폐사사건 연도인 '96년 이전 3년 평균으로 하여야 하나, 파주시 "선단별·연도별 어획량 및 판매실적"이 '95년 이전 자료는 파기하여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94년 일부와 '95년 이후부터 존재하고 있는 바, '95년의 어획량과 판매액을 비교년도로 하였다.

(2) 임진강 수질오염 기여율 산정

- 임진강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 기여율은 <99년 임진강 수계 수질오염 현황과 관리대책, 환경부>하천별 배출오염 부하량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3) 배상액 종합(금 58,045,000원)

- 임진강의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은 수중 용존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로서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여러 복합원인 중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배출한 "유기체 탄소 등 수중유기물질 및 질소·인 등 부영양화물질, 저급지방산 물질" 등이 수중 용존산소 감소에 직·간접 원인물질로 작용하였는 바, 그 배상액은 신천에 폐수를 배출하는 피신청인 사업장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임진강 물고기 폐사 전년도인 '95년 어획량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비교대상 보다 적게 생산된 '96년의 판매액 차이를 "피해금"으로 인정하고, 임진강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중 신천이 미치는 기여율을 산정하여 기여율에 따른 배상금을 결정하였다.

배상금은 공동불법 행위자가 연대(부진정)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은 기여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5. 재정결과에 따른 당사자 승복여부

- 승복

